

「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8조, 제15조, 제15조의3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구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,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제1조~제4조)
- 설치 및 운영, 사업, 운영비의 보조,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8조)
-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, 운영위원회 구성(안 제9조~제10조)
- 지도·감독,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
- 합 의 :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민간위탁의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적·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불안·우울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됨.
- 정신건강을 소홀히 할 경우 전혀 예상치 못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므로 시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, 재활 등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임.